

한·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(예시)

외교통상부(통상교섭본부)

한·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-국가분쟁해결절차(ISD)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,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.

1 협정의 적용배제

□ 공공퇴직제도·법정사회보장제도(제13.1조제3항가호)(330쪽¹⁾)

- 공공퇴직제도(예:국민연금) 및 법정사회보장제도(예: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□ 중앙은행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(제13.1조제3항나호)(330쪽)

- 중앙은행(한국은행), 통화관련 국가기관(기획재정부 등) 및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금융기관(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)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

□ 국책금융기관(제13장 서한의 “일정 정부 기관”)(360쪽)

- 국책금융기관(총 8개: 예금보험공사, 정리금융공사, 수출입은행, 한국수출보험공사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투자공사)

□ 정부제공 공공서비스(제12.1조제6항)(301쪽)

-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(소방, 경찰, 교정 서비스 등)

□ 보조금

- 한·미 FTA에는 보조금 규정 부재(특히, 보조금에 대하여는 투자, 서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 명시(제11.12조제5항나호, 제12.1조제4항라호)) (269쪽, 301쪽)

□ 도박 및 베팅 서비스(제12장 서한)(321쪽)

1) 쪽수는 국회에 제출된 한·미 FTA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협정문 기준임.

2 예외

□ 일반적 예외

- 상품, 농업, 섬유, 원산지, 무역원활화, SPS, TBT(제2~4, 6~9장)에 대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(제23.1조제1항)(534쪽).

*공중도덕 보호 조치, 인간·동물·식물의 생명·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

- 서비스, 통신, 전자상거래(제12,14,15장)에 대해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(제23.1조제2항)(534쪽).

*공중도덕 보호 조치, 인간·동물·식물의 생명·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

□ 필수적 안보(제23.2조)(534~535쪽)

- 우리나라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“우리나라가 판단하는” 조치는 협정 전체의 예외임.

※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나라가 “필수적 안보” 예외를 원용하면 ISD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이 이를 그대로 인정(제23장각주2)(535쪽)

□ 비차별적 과세조치(제23.3조)(535~537쪽)

□ 비차별적 통화·신용·환율정책(제13.10조제2항)(335쪽)

□ 건전성 조치(제13.10조제1항)(335쪽)

- ① 금융소비자 보호, ② 금융기관 건전성, ③ 금융제도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

□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상의 단기세이프가드조치(부속서11-사)(297쪽)

□ 간접수용 예외(부속서11-나)(291~292쪽)

- 공공복지(공중보건, 안전, 환경, 부동산 등)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.

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

□ 정부조달

- 학교급식용 식재료 국내산 농산물 우선 구매(부속서17-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)(428쪽)
-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(부속서17-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)(428쪽)
- MRO(소모성 행정용품)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)(부속서17-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)(428쪽)
- 농수축산물 공공비축제도* 유지(양곡관리법,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)(부속서17-가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제5항)(422쪽)
*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,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제 도입
- 민간투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 장려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)(부속서17-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나호)(428쪽)
- 긴급상황시 국산 의약품 우선 구매 등 국민 생명·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달 관련 자율성 확보(제17.3조제1항(정부조달협정제23조 준용))(409쪽)

□ 금융

- 정부지원기관(총 5개: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주택금융공사, 농협, 수협)에 대한 조세 면제, 채권 보증, 손실 보전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유지(현재유보: 부속서Ⅲ 제1절 12번째 유보)(702쪽)
- 보험회사, 은행,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(부록Ⅲ-가 나호 및 라호)(687쪽)
- 예금·대출 이자율,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유지(부록Ⅲ-가 카호)(688쪽)

□ 공공 서비스

-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(제16.2조, 제16.3조 및 제16장각주3)(401~402쪽)

-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민간 이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지(미래유보: 부속서II 2번째 유보)(618~619쪽)

□ 외국인투자 유치

- “공공질서 유지”를 위해 투자 설립·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채택가능 (미래유보: 부속서II 1번째 유보)(616~617쪽)

□ 지적재산권

- 의약품 등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 유지(제18.9조제3항)(450쪽)

4 **현재유보 · 미래유보**

※ 유보대상의무(총6개)

- 투자분야(4개): 내국민대우(제11.3조), 최혜국대우(제11.4조), 이행요건 부과금지(제11.8조),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금지(제11.9조)
- 서비스분야(4개): 내국민대우(제12.2조), 최혜국대우(제12.3조), 시장접근(제12.4조), 현지주재(제12.5조)

※ 최소기준대우(제11.5조), 수용 및 보상(제11.6조), 송금(제11.7조) 등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적 의무임.

□ 투자·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(별첨1)

※ 현재유보: 협정상 유보대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

□ 투자·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(별첨2)

※ 미래유보: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(포괄적인 정책 자율권 확보)

□ 금융분야 현재·미래유보 18개 (별첨3)

별첨 1

한국의 투자·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

| 번호 | 구분 | 유보 분야 | 대상 의무 | 내용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1 | S | 건설 서비스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2 | S | 건설기계 서비스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3 | S | 자동차 정비·수리·판매·폐기·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4 | S | 담배·주류 도소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5 | I | 농축산물 | NT | 1) 쌀 및 보리 재배·투자 금지 2)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(50%) |
| 6 | S | 안경사 | MA LP | 1)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) 1개 업소 설치 요건 |
| 7 | S | 식품·의약품(한약재포함)·기능성 식품 등의 도소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|
| 8 | S | 의약품 소매(약국) | MA LP | 1)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) 1개 업소 설치 요건 |
| 9 | S | 철도운송 | MA |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|
| 10 | S | 도로 여객 운송(택시·노선 버스 제외)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11 | S | 해운 서비스(국제화물운송, 도선업, 선박투자회사) | NT MA LP | 1) 도선업의 적용중인 NT 제한 명시 2)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) 설립형태 제한 명시(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) |
| 12 | I | 항공운송 | NT SMBD | 1)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(49%) 2) 이사회 의 국적제한 명시 |
| 13 | S,I | 항공운송(특수항공) | NT SMBD LP | 1)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(49%) 2) 이사회 의 국적제한 명시 3)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|
| 14 | S | 도로운송 서비스(주차장, 견인 등)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)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15 | S | 쿠리어 서비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)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16 | S,I | 통신 서비스 | NT MA LP | 1)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)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)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17 | S | 부동산(중개-감평) | LP |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|
| 18 | S | 의료기기 임대·정비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19 | S | 자동차 임대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20 | S,I |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| NT |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|
| 21 | S | 법률서비스 | MA LP | 1)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)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|
| 22 | S | 노무사 서비스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23 | S | 변리사 서비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24 | S | 회계·감사 서비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25 | S | 세무사 서비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| 26 | S | 통관 서비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|

※ S:서비스, I:투자, NT:내국민대우, MFN:최혜국대우, PR:이행요건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, MA:시장점근, LP:현지주재

| 번호 | 구분 | 유보 분야 | 대상 의무 | 내용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27 | S | 산업보건·안전 서비스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28 | S | 엔지니어링 서비스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29 | S,I | 옥외광고물전광판 | PR SMBD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2)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) 프로그램의 30%를 (국산) 공공 광고 편성 의무 |
| 30 | S,I | 인력 배차선원 배치 서비스 | NT MA LP | 1)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)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|
| 31 | S | 경비 서비스 | MA LP | 1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) 사업 형태 제한 명시 |
| 32 | S | 간행물 유통 | NT | 외국 간행물의 수입·유통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요인 명시 * 외국산 : 事前 문화부 추천 필요 * 국내산 : 事後 심사 (필요시) |
| 33 | S | 항공기 정비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34 | S,I | 고등교육 | NT MA SMBD | 1)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) 사업 형태 제한 명시 *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|
| 35 | S,I | 성인교육 | NT MA | 1) 외국인이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(성인 대상, 학위 수여 금지) 2)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|
| 36 | S | 직업 훈련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37 | S |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38 | S | 환경 서비스 | LP |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|
| 39 | S | 공연 서비스 | NT |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진(promotion)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 요인 명시 * 事前 추천 필요 |
| 40 | S,I | 뉴스통신 서비스 | NT SMBD MA LP | 1)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(연통)를 경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)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(25%) 3)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4) 연합통신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|
| 41 | I | 혈액 제재 | PR | 대한적십자사의 독점 영역임을 명시 |
| 42 | S,I | 정기간행물(신문 제외) | NT SMBD MA LP | 1) 정기간행물의 발행인·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(한국인만 가능) 2)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(50%) 3) 외국 정기간행물의 한국내 지점은, 본국에서 편집된 내용을 국내에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확인함 (한국어가 아닌 경우로 한정) |
| 43 | S,I | 농축산물 유통 | NT MA | 1)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(50%) 2) “가축시장”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) “공용도매시장”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) 서비스 chapter의 NT,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|
| 44 | S,I | 방송 서비스 | NT PR SMBD MA LP | 1)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) 국산 영화·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)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)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) 1개국 쿼타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|
| 45 | I | 에너지(전력) | NT | 1)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(40%) 2)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%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) 전력의 송·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(50%) |
| 46 | I | 에너지(가스) | NT |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(30%) |
| 47 | S,I | 스크린 쿼타 | PR MA | 스크린당 73일임을 명시 |

※ S:서비스, I:투자, NT:내국인대우, MA:최혜국대우, PR:이행요건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, MA:시장접근, LP:현지주재

별첨 2

한국의 투자·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

| 번호 | 구분 | 유보 분야 | 대상 의무 | 내용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I | 외국인 투자 | NT PR |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|
| 2 | I, S,I |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| NT PR SMBD LP | 포괄적 유보 * 다만,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|
| 3 | I | 외국인토지 | NT | 포괄적 유보 |
| 4 | S,I | 총포·도검 및 화약류 | NT PR SMBD LP | 포괄적 유보 |
| 5 | S,I | 취약집단 (장애인,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) | NT MFN PR SMBD LP | 포괄적 유보 |
| 6 | S,I | 국가소유의 국가전자/정보시스템 | NT LP PR SMBD | 포괄적 유보(* 다만,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) |
| 7 | S,I | 사회 서비스 (공공 서비스) | NT MFN LP PR SMBD | 포괄적 유보 |
| 8 | S | MA 포괄유보 | MA |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,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|
| 9 | S,I | MFN 포괄 유보 | MFN | 1) KORUS 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) KORUS 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* 단, 항공·해운·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|
| 10 | S,I | 방송 서비스 | MFN |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, MFN 포괄 유보 |
| 11 | S,I | 철도운송 서비스 | MFN |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, MFN 포괄 유보 |
| 12 | S,I | 환경 서비스 (음용수, 생활폐수, 자연보호 등) | NT PR LP | 포괄적 유보 * 단,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間 계약은 인정 |
| 13 | S,I | 원자력 에너지 | NT PR SMBD LP | 포괄적 유보 |
| 14 | S,I | 에너지 (전력) | NT PR SMBD LP | 포괄적 유보 * 단,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|
| 15 | S,I | 에너지 (가스) | NT PR SMBD LP | 포괄적 유보 * 단,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|
| 16 | S,I | 농축산물(인삼, 쌀, 홍삼) | NT PR LP | 중개, 도매, 소매 포괄 유보 |
| 17 | S,I | 육상 여객운송 (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) | NT MFN PR SMBD LP | 포괄 유보 |
| 18 | S,I | 육상 화물운송 (쿠리어 제외) | MFN PR SMBD LP | 포괄 유보 |
| 19 | S,I |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| NT MFN PR SMBD LP | 포괄 유보 |
| 20 | S,I | 쌀의 저장 및 보관 | NT | 포괄 유보 |
| 21 | S,I | 우정사업 (비독점 영역) | NT | 우정사업본부가 누리는 혜택 (공익 활용,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) 유보 |

※ S:서비스, I:투자, NT:내국민대우, MFN:최혜국대우, PR:이행요건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, MA:시장접근, LP:현지주재

| 번호 | 구분 | 유보 분야 | 대상 의무 | 내용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22 | S,I | 방송서비스 | NT PR SMBD MA LP |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 1) 매체간 교차 소유 2) 외국인의제 조항의 강화 권한(PP는 제외) 3) 이사의 국적 제한 4) 만화총량제 5)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 6)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(VOD)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)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*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필요 |
| 23 | S,I | 방송-통신 융합 서비스 | NT PR SMBD MA LP | 포괄 유보 * 방송으로 분류되던 통신으로 분류 되던,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 |
| 24 | S,I | 방송 서비스 (시청각 공동제작 협정) | MFN PR | 포괄 유보 |
| 25 | S,I | 방송 서비스 (국산 영상물 인정 기준) | NT PR | 포괄 유보 |
| 26 | S,I | 부동산 서비스 (중개-감평 제외 부동산) | NT PR LP | 포괄 유보 |
| 27 | S,I | 지급 불능 및 구조조정 (법정 관리) 서비스 | NT SMBD LP | 포괄 유보 |
| 28 | S,I |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| NT MFN PR LP | 포괄 유보 *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때 활용 가능한 유보안으로,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 |
| 29 | S,I | 지점측량 및 관련 지도제작 | NT | 포괄 유보 |
| 30 | S,I |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-인증-등급판정 | NT LP | 포괄 유보 |
| 31 | S,I | 농업·수렵·임업·어업 부수 서비스 | NT PR SMBD LP | 포괄 유보 * 인공수정, 유전적 개량, 벼 및 보리의 도정, 미곡 종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|
| 32 | I | 어업 | NT | 포괄 유보 |
| 33 | S,I | 신문 발행 및 배포 | NT SMBD LP | 포괄 유보 |
| 34 | S,I | 교육 서비스 (유아, 초·중·고, 기타) | NT MFN PR SMBD LP | 포괄 유보 |
| 35 | S,I | 보건의료 서비스 | NT MFN PR SMBD LP | 포괄 유보 * 단,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설립 가능한 영리 병원 예외 |
| 36 | S,I | 영화 서비스 (스크린쿼터를 제외한 여타 사항) | NT MFN PR LP | 영화의 진흥(promotion), 광고, 후반제작 등에 대해 포괄 유보 |
| 37 | S,I | 문화재 보호 | NT PR SMBD LP | 포괄 유보 |
| 38 | I | 농어촌 관광 | NT | 포괄 유보 |
| 39 | S,I | 법률 - 외국법 자문사 | NT SMBD LP |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|
| 40 | S,I | 회계 - 외국 공인회계사 | NT SMBD LP |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|
| 41 | S,I | 세무 - 외국 세무사 | NT SMBD LP |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|
| 42 | S | 전략물자 | NT LP | 포괄 유보 |
| 43 | I |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| NT PR SMBD | 포괄 유보 |
| 44 | S,I | 해운 - cabotage, 해상 여객 운송 | NT MFN PR SMBD LP | 포괄 유보 |

※ S:서비스, I:투자, NT:내국민대우, MFN:최혜국대우, PR:이행요건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, MA:시장접근, LP:현지주재

별첨 3

한국의 금융분야 현재·미래유보 18개

| 번호 | 성격 | 유보 분야 | 대상 의무 | 내용 |
|----|----|-------|-------|--|
| 1 | 현재 | 보험 | MA | 1)상업은행, 상호저축은행,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,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. 2)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,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|
| 2 | 현재 | 보험 | CBT | “강제적인”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. *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,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|
| 3 | 현재 | 은행·기타 | NT | 1)외국금융기관은 “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”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·은행지주회사 지분 10% 초과 보유 가능 2)-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기준 적용 -자연인은 지분 10% 초과 보유 불가 -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% 초과 보유 불가. 단,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%까지 가능 |
| 4 | 현재 | 은행·기타 | NT |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*단,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|
| 5 | 현재 | 은행·기타 | MA |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·선물시장 운용 가능 |
| 6 | 현재 | 은행·기타 | MA |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·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|
| 7 | 현재 | 은행·기타 | MA | 한국증권선물거래소·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·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·결제 업무 수행 가능 |
| 8 | 현재 | 은행·기타 | CBT | 한국 거주자·금융기관·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, 옵션,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|
| 9 | 현재 | 은행·기타 | NT | 1)외국은행·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)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|
| 10 | 현재 | 은행·기타 | MA |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)신용협동조합 2)상호저축은행 3)여신전문금융회사 4)종합금융회사 5)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)신용정보회사 7)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)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)채권평가회사 |
| 11 | 현재 | 은행·기타 | MA |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|
| 12 | 현재 | 은행·기타 | NT | 정부지원기관(산은, 기은, 주택금융공사, 농협, 수협)에 대해 채권보증, 손실 보전,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|
| 13 | 현재 | 은행·기타 | SMBD | 주택금융공사, 농협,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. |
| 14 | 현재 | 은행·기타 | NT |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|
| 15 | 현재 | 은행·기타 | MA |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|
| 16 | 미래 | 보험 | CBT | “강제적인”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*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,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|
| 17 | 미래 | 은행·기타 | NT | 정부 소유·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,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|
| 18 | 미래 | 은행·기타 | NT | 한국증권선물거래소,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|

※ NT:내국민대우, MFN:최혜국대우, MA:시장접근, CBT:국경 간 무역, SMBD:고위경영진 및 이사회